

희망키움통장 II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기초수급자 등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본인저축액에 장려금 매칭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8,111,708천원	[국비]4,762,770천원	[사비]3,348,938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자활지원과	오성문 2133-7480	박용숙 2133-7495	김진형 2133-7497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4,400,000) 7,330,895	(x4,762,770) 8,111,708	(x362,770) 780,813	(x8) 10
사회복지사업보조	(x4,400,000) 7,330,895	(x4,762,770) 8,111,708	(x362,770) 780,813	(x8) 1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사업비 7,977,308,000원	= 7,977,308천원
	○ 위탁운영비 134,400,000원	= 134,400천원

3 사업 설명

- 사업목적
 -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 일정액의 장려금 지원
- 사업근거
 - 법령상 근거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(자산형성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
 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희망·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- 사업내용
 - 사업기간 : 25개 자치구 및 서울광역자활센터
 - 지원대상 : 주거, 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가구 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 - 지원내용 : 가입자의 개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지원
 - 사업기간 : 분기별 실시
 - 총사업비 : 8,111,708천원
 - 희망키움통장Ⅱ : 국비 54%, 시비 46%
- 추진경위
 - 2014.7. :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시행
 - 2015.7.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‘가입대상’ 변경 (기존 ‘최저생계비 기준’ ⇒ 변경 ‘중위소득 기준’)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8,111,708	
가입자 모집	2018.01~2018.12		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함
자립역량강화교육	2018.01~2018.12		자치구별로 실시
사업비 교부 및 집행	2018.01~2018.12	8,111,708	분기별 신청 및 교부

사업비 정산 및 반납	2018.~2018.12	보조금 정산 등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4 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희망키움통장Ⅱ : 1,573가구 신규 지원
2016년도	○ 희망키움통장Ⅱ : 2,211가구 신규 지원
2017년도	○ 희망키움통장Ⅱ : 3,348가구 신규 지원

향후 기대효과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유도 및 자립지원 활성화